

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5-10호

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체통 설치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3월 24일

우정사업본부장

1. 우체국 설치 현황

(2024. 12월말)

구 분	우체국	출장소	우편취급국	계
서울지방우정청	199	3	198	400
경인지방우정청	368	30	175	573
부산지방우정청	409	8	158	575
충청지방우정청	383	9	104	496
전남지방우정청	324	6	46	376
경북지방우정청	356	10	64	430
전북지방우정청	204	4	34	242
강원지방우정청	146	19	32	197
제주지방우정청	36	1	10	47
계	2,425	90	821	3,336

2. 우체통 설치 현황

(2024. 12월말)

구 분	갑2호	갑3호	을2호	겸용	ECO	계
서울지방우정청	-	539	-	204	89	832
경인지방우정청	1,228	279	149	125	-	1,781
부산지방우정청	596	590	43	2	-	1,231
충청지방우정청	771	245	72	1	1	1,090
전남지방우정청	481	244	14	1	-	740
경북지방우정청	609	346	61	6	-	1,022
전북지방우정청	456	-	45	2	-	503
강원지방우정청	362	-	33	1	-	396
제주지방우정청	82	-	1	31	-	114
계	4,585	2,243	418	373	90	7,709

3. 재검토기한 :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-10호 (2022.3.21.)는 폐지한다.